

소수집단 학생 지원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루터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

- ① 장애학생
- ② 외국인 유학생
- ③ 다문화가족 학생
- ④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
- ⑤ 만학도(만 30세 이상인 학생) (2018.2.2.신설)

제3조(지원범위)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(2019.9.4.개정)

- ① 대학생활 지원
- ② 대학생활 및 복지 관련 지원
- ③ 도우미(멘토) 지원
- ④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

제4조(담당부서 및 지원체계) ①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(2019.9.4.개정)

1. 장애학생 지원: 장애학생지원센터, 교학처
2. 외국인 유학생 지원 : 교학처
3.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 지원: 교학처
4. 만학도 : 교학처

②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 및 전공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,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(2019.9.4.개정),(2020.2.25.개정)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 다만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칙」에 따른다. (2019.9.4.신설)

-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 (2019.9.4.신설)
- ③ 교학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내·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2019.9.4.신설)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, 연임할 수 있다. (2019.9.4.신설)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2019.9.4.신설)

1. 소수집단학생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

2.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3. 소수집단학생 지원 결과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(2019.9.4.신설)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(2019.9.4.신설)

제8조(위원회 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 (2019.9.4.신설)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(2019.9.4.신설)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한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 (2019.9.4.신설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